



제418회국회(정기회)
제9차보건복지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전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추경호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1625호)

2024. 11.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전문위원 정 경 윤

목 차

I. 개요	1
II. 검토의견	3
1. 총괄적 검토	3
2. 조문별 검토	12
가.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제명 및 안 제1조)	12
나.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 및 제2조)	14
다. 정의(안 제3조)	16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18
마.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의 인구위기 대응정책 총괄·조정(안 제7조)	20
바. 인구위기 대응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22
사.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의 사전조정 및 심사(안 제9조제3항 등)	26
아. 인구위기 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32
자. 인구위기 대응정책의 조사·분석·평가(안 제13조)	36
차. 전문조사·연구기관의 지정(안 제14조)	38
카. 저출생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획(안 제15조)	42
타. 인구위기 대응정책의 기본방향(안 제4장: 안 제16조부터 안 제30조까지)	45
파. 부칙 등	52
※ 참고자료	56

I. 개요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추경호의원 등 108인
- (2) 제 안 일 : 2024. 7. 11.
- (3) 회 부 일 : 2024. 7. 1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후 2006년 제1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을 시작으로 현재 4차 기본계획(2021년 ~ 2025년)을 수립하기까지 다양한 정책을 도입·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합계출산율 0.72명을 기록하는 등 심각한 저출생 상황이 지속되고 있음. 또한 저출생과 함께 2025년에는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 등 인구구조 변화의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음.

하지만 현재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정책 범위를 저출산과 고령사회 대응에 한정하고 있으며 여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흩어져 있는 관련 정책을 효과적으로 총괄·조정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함.

이에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전부 개정하여 정책의 범위를 ‘인구구조 변화 대응’까지 확대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과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평가하고 환류하는 등 강력한 기획·조정 권한을 부여하여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Ⅱ. 검토의견

1. 총괄적 검토

- 개정안은 현재의 저출생 상황을 반전시키고 인구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1) 제명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서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변경하고, (2) 정책 범위를 기존의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서 인구의 국가 간 이동까지 확대하며, (3)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총괄·조정, (4)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 수립 및 저출생 관련 사업에 대한 사전심의, (5)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위원장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 신설, (6)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 등임.
- 개정안은 현행법과 비교하여 인구정책의 범위를 저출산·고령화에서 인구의 국가 간 이동까지 포괄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사전 심의, 정책 평가 기능을 가지며, 아울러 대통령 소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인구전략기획부 소속으로 개편하여 인구정책의 권한·책임을 일원화하고 있는 것이 큰 차이점이라고 볼 수 있음.

< 현행법과 개정안의 주요 내용 비교 >

개정안	현행		개정안
법률 제명 변경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	「인구위기대응기본법」
정책 범위 확대	<u>저출산·고령사회</u> 정책 - <u>저출산</u> 및 <u>인구의 고령화</u> 에 따른 변화에 대응	⇒	<u>인구위기대응</u> 정책 - <u>저출생·고령화</u> 및 <u>인구의 국가 간 이동</u> 등 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를 예측하고 대응
정책 심의기구 (위원회) 개편	<u>저출산·고령사회</u> 위원회 - 대통령 소속 - 위원장: <u>대통령</u>	⇒	<u>인구위기대응</u> 위원회 - 소속 : (인구전략기획부) - 위원장: <u>인구전략기획부장관(부총리)</u>
정책 총괄·조정	-	⇒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u>인구위기대응정책 총괄·조정</u> 권한 명시
예산 사전심의	-	⇒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u>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 사전심의권</u> 부여 -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

□ 한편, 우리나라는 저출산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인구감소, 고령화 등의 인구구조 변화가 세계 최고 수준의 속도로 가속화될 전망이다.

우선, 합계출산율 통계를 살펴보면, 2021년 0.81명까지 하락하여¹⁾ 전 세계 198개국 중 최하위 국가에 해당하고, 코로나19로 인한 혼인감소 등으로 2024년에는 합계출산율이 0.7명까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 총인구는 2020년 5,184만명을 정점으로 2021년부터 하락 전환 되었으며²⁾, 2070년에는 3,766만명 수준으로 줄어듦 전망임³⁾.

1) 합계출산율(명): ('83) 2.06(인구대체율 하회), ('18) 0.98, ('19) 0.92, ('20) 0.84, ('21) 0.81

2) 총인구(만명): ('16) 5,122 ('17) 5,136 ('18) 5,158 ('19) 5,176 ('20) 5,184 ('21) 5,174

3) 2020년 대비 △27.3%

□ 최근 10년 동안의 우리나라 인구동향을 살펴보면, 출생아 수는 2014년 약 44만명에서 2023년 약 23만명으로 감소하였고, 사망자 수는 2014년 약 27만명에서 2023년 약 35만명으로 증가하면서, 2020년부터 출생아 수와 사망자 수를 비교한 자연증가건수가 마이너스 수치로 전환하였으며, 이후 그 폭이 점차 확대되고 있음.

< 최근 10년 간 출생아수 및 사망자수 현황 >

(단위: 명)

구분	출생아 수	사망자 수	자연증가건수
2014	435,435	267,692	167,743
2015	438,420	275,895	162,525
2016	406,243	280,827	125,416
2017	357,771	285,534	72,237
2018	326,822	298,820	28,002
2019	302,676	295,110	7,566
2020	272,337	304,948	-32,611
2021	260,562	317,680	-57,118
2022	249,186	372,939	-123,753
2023*	230,000	352,700	-122,800

※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주: 2023년 출생아 수 및 사망자 수는 잠정치

□ 또한 여성 한 명이 출산하는 평균 자녀 수를 의미하는 합계 출산율⁴⁾도 2014년 1.21명에서 2023년 0.72명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낮은 수치이며⁵⁾,

4) 합계출산율(Total Fertility Rate [TFR]: 여성 1명이 평생 동안 평균 몇 명의 자녀를 낳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출산력 수준 비교를 위해 대표적으로 활용되는 지표로서 연령별 출산율(Age-specific Fertility Rate : ASFR)의 총합(국가통계포털, <https://kosis.kr>)

5)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의 OECD 회원국 통계에 따르면, 합계출산율에서 대한민국 다음으로 낮은 수치를 보이는 국가들은 스페인(1.29), 이탈리아(1.30), 일본(1.32), 포르투갈(1.37), 그리스(1.38) 순임.

향후 10년 동안의 전망치를 살펴보면, 2025년까지 0.65명으로 낮아진 후에는 2033년 0.92명으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나, 향후 전망 또한 인구의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합계출산율로 보는 약 2.1명⁶⁾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임.

< 합계출산율 현황 및 전망(2014~2033년) >

(단위: 명)

연도	합계출산율 현황	연도	합계출산율 전망
2014	1.21	2024	0.68
2015	1.24	2025	0.65
2016	1.17	2026	0.68
2017	1.05	2027	0.71
2018	0.98	2028	0.75
2019	0.92	2029	0.78
2020	0.84	2030	0.82
2021	0.81	2031	0.85
2022	0.78	2032	0.88
2023	0.72	2033	0.92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통계청, 인구동향조사 및 장래인구추계)

□ 아울러 기대수명 증가와 저출산 가속화로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⁷⁾되고 있는데, 베이비붐 세대의 고령층 진입에 따라 2025년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는 등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⁸⁾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음⁹⁾.

6) 1970년대 약 3~4명 수준이던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983년 인구대체 수준인 2.08명으로 하락하였음.(신윤정, 「출산율 회복, 50년 걸린다」, 『나라경제』 제20권 제10호 통권 제227호, KDI 경제정보센터, 2009년, p.80.)

7) 고령자비중(65세 이상, %) : ('00)7.2 ('18)14.3 ('21)16.6 (OECD평균 17.5, '20년) ('25)20.6 ('50)40.1 ('70)46.4

8) 고령사회→초고령사회(고령자비중 20% 이상) 도달년수 : (佛)29년 (美)15년 (日)11년 (韓)7년

9)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관계부처 합동, p1.

< 인구 규모 및 연령별 구조 현황과 전망(2013~2043년) >

(단위: 만명, %)

구분		2013	2018	2023	2025	2028	2033	2038	2043
총인구		5,043	5,159	5,171	5,168	5,146	5,104	5,042	4,938
인구 성장률		(0.46)	(0.43)	(0.08)	(-0.13)	(-0.15)	(-0.19)	(-0.30)	(-0.49)
인 구 구 조	0~14세	7,392	6,595	5,705	5,258	4,531	3,801	3,795	3,956
		(14.7)	(12.8)	(11.0)	(10.2)	(8.8)	(7.4)	(7.5)	(8.0)
	15~64세	37,014	37,624	36,572	35,912	34,804	32,979	30,130	27,632
		(73.4)	(72.9)	(70.7)	(69.5)	(67.6)	(64.6)	(59.8)	(56.0)
	65세 이상	6,023	7,366	9,436	10,513	12,125	14,260	16,492	17,792
		(11.9)	(14.3)	(18.2)	(20.3)	(23.6)	(27.9)	(32.7)	(36.0)

※ 자료: KOSIS 국가통계포털(<https://kosis.kr>, 통계청, 장래인구추계 - 중위추계시나리오 기준)

*주- 2022~2072년에 대한 장래인구추계 중 2013~2043년까지의 통계자료를 5년 단위로 기재하고, 인구성장률이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 전환하는 2025년도 함께 기재

이에 따라 학령인구와 병역자원이 감소하고 지역소멸은 가속화되며,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고령화 등으로 성장잠재력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고, 노인부양비가 급등함에 따라 복지제도 안정성이 저하되는 등 경제 사회 전반에 광범위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됨.

- 그림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2005년 제정 이후 체계와 내용이 큰 변화 없이 지속되어 온 바,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정부조직 체계(참고자료)를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이 총괄기관으로서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또한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고 관계 부처 장관과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저출산·고령사회위

원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면서¹⁰⁾ 큰 틀에서의 인구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있음.

□ 하지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대통령 직속 기관임에도 정책심의 권한만 있을 뿐 집행권과 예산권이 없어 새로운 인구정책 개발이나 부처 간 정책조정 등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 등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견과 함께 사회적 분위기를 획기적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정책 추진 체계 전환 및 인구정책 전담 중앙행정기관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바,

- 10)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생략)
-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 2. 29., 2010. 1. 18.>
- ③ ~ ⑤ (생략)
-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략)
-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고령화 및 저출산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시행령」 제5조(위원회의 구성) ① 법 제23조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및 법제처장(이하 “당연직위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 ② · ③ (생략)
- ④ 위원회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원회의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다.
- ⑤ 위원회에 부위원장을 두며, 부위원장은 법 제23조제5항에 따라 대통령이 지명하는 간사위원이 된다.
- ⑥ (생략)

금번 개정안은 인구정책의 범위를 ‘인구의 국가 간 이동’까지 확대하고, 인구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총괄·조정하게 하면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와 함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인구 위기대응정책에 대한 평가 등의 권한을 부여하는 등의 조치를 담은 것으로, 우리나라의 급격한 인구 변화로 인한 사회적 충격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보임.

□ 한편, 개정안에 따른 인구전략기획부의 예산 사전 심의 범위가 저출생 분야에 한정되어 있는데 이를 개정안의 고령화 등 정책범위와 일치하도록 확대할 필요성과 함께 인구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서는 지자체와 정책수요자인 청년·양육부모 등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수적인 만큼 인구위기대응위원회에 이들을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위원 수를 확대할 필요 등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겠음.

□ 참고로,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면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사회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추경호의원 대표발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2201610호) 등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는바, 금번 전부개정안과의 밀접한 관련성을 고려하여 위 개정안들에 대한 행정안전위원회

의 심사경과를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내용 비교 >

개정안	신설조직 명칭	부총리 여부	관장 사무	업무 이관 기관
김성원 의원안 (제388호)	저출생 대응기획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구구조변화 대응	보건복지부
백혜련 의원안 (제623호)	인구위기 대응부	부총리 (인구정책 총괄·조정)	-인구정책 수립·총괄·조정 -인구위기대응전략	보건복지부
서삼석 의원안 (제1066호)	저출산 고령화 대응기획부		-출산 및 노인 정책의 기획·종합 -노인에 대한 보호·지원 ※보건복지부 관장사무에서 ‘노인’ 삭제	보건복지부
박성민 의원안 (제1398호)	저출산 대응기획부	부총리 (사회·교육·문 화정책 총괄·조정) ※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저출산대응기 획부장관이 겸임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수립·총괄· 조정 -인구정책의 수립·총괄 -청소년 및 가족 (다문화가족과 건강가정사업을 위한 아동업무 포함) ※여성가족부 폐지 → 청소년·가족 업무 이관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폐지)
추경호 의원안 (제1610호)	인구전략 기획부	부총리 (인구·사회·문 화정책 총괄·조정) ※ 교육부장관 겸임 부총리 →인구전략기 획부장관이 겸임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 ※기획재정부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사무에서 ‘인구에 관한 사 항’ 제외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한병도 의원안 (제2877호)	인구전략부	부총리	-중장기적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 -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구조변화 대응	보건복지부

□ 그 외 우리 위원회에 인구정책 운영체계를 개편하려는 개정안과 유사한 취지를 포함하고 있으나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일부개정하는 방식인 한창민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284호), 개정안의 일

부 내용과 유사한 인구영향평가를 도입하려는 윤준병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2201364호) 및 저출생 대응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일·가정양립계정, 돌봄계정, 모자보건계정으로 구분되는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를 설치하려는 김희정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3693호) 「저출생 대응 특별회계법안」이 계류 중임.

2. 조문별 검토

가. 저출생으로 용어 변경(안 제1조 등)

- 개정안에서는 현행법상 ‘저출산’이라는 용어를 ‘저출생’이라는 용어로 대체하고 있음.

※ 저출산: 가임여성(15세~49세)이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출생아수가 적은 현상

저출생: 전체인구 중에서 새롭게 태어난 아이의 수가 적은 현상

- 개정안은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는 경우 저출산이 여성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구조적·종합적인 문제라는 인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임신·출산·양육 등 출산장려 정책에서 해외 인구 유입 등 인구구조 변화까지 정책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겠고, 아울러 ‘저출산’이라는 용어에 인구감소의 책임은 사회 전체에 있음에도 여성에게만 있는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는 성차별적 요소에서도 탈피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참고로, 최근 정부 부처나 지방자치단체 등에서도 ‘저출산’이라는 표현 대신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을 발표한 바 있고,¹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도 ‘저출생’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가 다수 있음¹²⁾.

11)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보도자료, 「**저출생** 추세를 반전시키기 위한 3대 핵심분야 총력 지원 + 사회인식 변화 노력 강화」(2024. 6. 19.) 참조

12) 「경기도 인구정책 기본조례」 제6조제1호(“저출생·고령사회 등에 따른 인구구조 불균형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서울특별시 사회문제해결디자인 조례」 제3조제1호(“고령화, **저출생**, 다문화가족 등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디자인”) 등 다수

< 저출생 용어 사용 자치법규 현황 >

법령명	지역명	법령종류	공포번호	공포일자
대구광역시 수성구 <u>저출생</u> 대책 기본 조례	대구광역시 수성구	조례	제1761호	2024. 5. 30.
대전광역시 대덕구 <u>저출생</u> 위기 극복을 위한 시책지원 조례	대전광역시 대덕구	조례	제1756호	2024. 6. 28.
봉화군 <u>저출생</u> ·고령사회정책 지원 조례	경상북도 봉화군	조례	제2389호	2023. 4. 17.
전라남도 <u>저출생</u> 대책 기본 조례	전라남도	조례	제5868호	2023. 11. 2.
전주시 <u>저출생</u>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조례	제3996호	2023. 3. 7.
전주시 <u>저출생</u>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규칙	제2258호	2023. 6. 28.

자료: 보건복지부

나. 목적 및 기본이념(안 제1조 및 제2조)

- 개정안은 기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까지 규율하는 것으로 확대하면서 기본 이념은 현행과 동일하게 규정하고 있음.

현 행	전부개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u>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는 저출산·고령사회정책</u> 의 기본방향과 그 수립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u>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u> ----- ----- ----- -----.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국가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인구 구성의 균형과 질적 향상을 실현하고, 국민이 건강하고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2조 (현행 제2조와 같음)

- ‘저출산’을 ‘저출생’으로 변경하면서 동 법의 ‘목적’에서도 여성의 임신·출산을 지원하는 출산 장려 중심의 저출생 및 고령자 지원 정책에서 이민이나 외국인 정주노동자 등의 문제까지 정책 범위를 확장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려는 금번 개정안은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종합적인 대비를 통하여 지속 가능한 사회·경제 정책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보임.

- 특히 인구의 국가 간 이동과 관련하여 2024년 7월 2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를 보면 지난해 총 인구 수는 5,177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만 2천명(0.2%) 증가한 것으로 조사된 바, 그 주요 원인은 상주 외국인¹³⁾이 2022년보다 18만 3,000명 증가된 193만 5,000만명으로 집계될 만큼 인구 요인에서 국가 간 이동 요인도 중요한 비중을 보이고 있기도 함.
- 다만, 개정안은 제명을 「인구위기대응기본법」으로 변경하면서, 그 정책범위도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도 포괄하는 것인 만큼, 우리나라 인구정책의 핵심적 당면과제인 ‘인구 안정의 도모’를 목적 규정에 추가할 필요와 함께, 기본이념 또한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하기보다는 정책 범위가 확대된 만큼 그에 맞추어 재구성할 필요도 있겠음.
- 그 외, 개정안의 정책범위인 안 제1조의 ‘저출생, 고령화,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와 관련하여, 저출생이나 고령화와 같은 인구의 변화요인에 의하여 영향을 받게 되는 인구구조에는 연령 구조 외에 성별구조 등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성별구조 등은 저출생이나 고령화 등과는 관련성이 없다는 점에서 ‘인구구조 변화’를 ‘인구변화’로 수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음.

13) 국내 3개월 이상 체류했거나 3개월 이상 체류 목적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의미함.

다. 정의(안 제3조)

- 개정안에서는 ‘인구의 고령화’와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대체한 ‘인구위기대응정책’ 등 2가지 사항에 관한 정의를 하고 있음. 인구의 고령화는 현행과 동일하며, 인구위기대응정책은 인구의 국가 간 이동과 같이 인구정책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른 변경사항을 추가하여 규정하고 있음.

현 행	전부개정안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구의 고령화”라 함은 전체인구에서 노인의 인구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말한다. 2. “ <u>저출산·고령사회정책</u> ”이라 함은 <u>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수립·시행하는 정책</u> 을 말한다.	제3조 (현행 제3조와 같음) 1. (현행 제1호와 같음) 2. “ <u>인구위기대응정책</u> ”이라 함은 <u>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인구의 총량 및 구성이 변화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를 예측하고 -----</u> .

- 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구의 고령화나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정의는 현행법을 바탕으로 하여 정한 것으로 보이지만, 인구위기 대응정책과 관련하여서는 인구위기 개념이 개정안의 핵심적 사항인 만큼, 그 입법 취지와 의미가 더욱 부각될 수 있도록 인구위기 개념을 보다 구체화하고, 위기로 인한 사회적 영향 등의 문제도 포괄하는 방향으로 수정될 필요도 있어 보임.

- 관련하여 입법례를 보면, 다수의 법률에서 소관하고 있는 위기 개념에 대해 그 의미를 구체화하여 규정하고 있는바, 특히 「기후위

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에서는 먼저 ‘기후위기’에 대해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 등을 반영하여 정의를 한 후, ‘기후위기 적응’에 대해 별도로 정의하고 있음.

< ‘위기’ 의미 구체화 관련 입법례 >

법률명	위기 관련 정의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기후위기”란 기후변화가 극단적인 날씨뿐만 아니라 물 부족, 식량 부족, 해양산성화, 해수면 상승, 생태계 붕괴 등 인류 문명에 회복할 수 없는 위험을 초래하여 획기적인 온실가스 감축이 필요한 상태를 말한다. (제2조제2호) “기후위기 적응”이란 기후위기에 대한 취약성을 줄이고 기후위기로 인한 건강피해와 자연재해에 대한 적응 역량과 회복력을 높이는 등 현재 나타나고 있거나 미래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되는 기후위기의 파급효과와 영향을 최소화하거나 유익한 기회로 촉진하는 모든 활동을 말한다.(제2조제11호)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자원안보위기”란 핵심자원을 안정적인 가격에 중단 없이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거나 공급량을 안정적으로 유지 및 관리할 수 없게 됨에 따라 국민생활, 경제활동 또는 산업생산에 심각한 지장이나 위해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제2조제4호)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공급망 위기상황”이란 공급망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아니함으로써 국가 및 국민의 경제활동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제2조제7호)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촉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	“공중보건 위기상황”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의 대유행(대유행이 현저히 우려되는 감염병의 발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탄저균·독성화학물질 등 생화학무기의 사용 등으로 인한 질병의 발생이나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제2조제1항제6호부터 제8호까지에 따른 핵물질 위험, 방사선비상, 방사능재난 등으로 국민의 생명·신체가 심각한 피해를 입거나 입을 수 있어 국가가 긴급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제2조제2호)

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안 제4조 및 제5조)

- 개정안 제4조에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해, 제5조에서는 국민의 책무에 대해 각각 규정하고 있음(안 제4조 및 제5조).

현 행	전부개정안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u>종합적인 저출산·고령사회정책</u> 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u>저출산·고령사회정책</u> 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u>저출산·고령사회정책</u>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 <u>인구위기대응정책</u> ----- ----- 인 구위기대응정책 ----- -----인구위기대응정책 을 수립·시행하여야 --.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중·장기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정책을 수립하는 경우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u>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u> 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 제8조에 따른 <u>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u> -----.
제5조(국민의 책무) ① 국민은 출산 및 육아의 사회적 중요성과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를 인식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u>저출산·고령사회정책</u> 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국민의 책무) ①----- ----- ----- ----- <u>인구위기대응정책</u> ----- -----.
② 국민은 가정 및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상호연대를 강화하고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현행 제2항과 같음)

- 개정안은 현행 「저출산·고령화사회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국민의 책무’ 체제와 동일한 구조로 동일 내용을 규정하면서,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을 ‘인구위기대응정책’으로 변경하고 있음.

- 한편, 금번 개정안은 우리 사회의 인구정책에 대한 기존의 패러다임을 전환하기 위한 것인 만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국민의 책무 외에도 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의 책무를 추가할 필요성에 대한 논의도 있어야 할 것으로 봄.
- 인구구조의 변화는 기업의 성장과 존폐 문제와도 직결될 수 있는 사안이며, 특히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인구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정책에 대한 참여를 높인다 하여도 직장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문화가 조성되지 못하는 등 인구정책이 실현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 기업 등에서 뒷받침하지 못한다면 인구정책의 실제 효과는 저하될 것이기 때문임.
- 그 외, 국민의 책무 조항(안 제5조)과 관련하여, 제1항 중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인구위기대응정책에 적극 참여’와 관련하여서는 책무보다는 국민의 ‘권리’로 볼 수 있겠고, 제2항 중 ‘각자의 노후생활을 건강하고 충실하게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와 관련하여, 노후생활의 건강한 영위 문제는 개인의 영역을 벗어나 국가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도 현 시점에서 감안할 필요가 있겠음.

마.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인구위기대응정책 총괄·조정(안 제7조)

- 개정안 제7조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총괄·조정하도록 하고 있음(안 제7조).

현 행	전부개정안
제7조(인구정책)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7조(인구위기대응정책의 총괄·조정) 인구위기대응정책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총괄·조정한다.

- 이처럼 인구정책과 관련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 총괄·조정토록 한 것은 인구정책에 대한 컨트롤타워로서, 인구구조 변화에 전문성을 갖고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취지로 이해됨.
-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상기한 바와 같이 인구에 관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수립, 인구정책의 수립·총괄·조정·평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하면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사회부총리로 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사회 정책에 관하여 국무총리의 명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을 총괄·조정하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대표발의(2024.7.11. 의안번호 제2201610호)] 등이 소관 위원회에 계류 중에 있음.
- 다만, 개정안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인구정책에 관한 총괄·조정

을 위한 절차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를 두고 있는데, 이는 인구정책의 원만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이해되나, 정책의 경중을 떠나 모든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해 광역·기초 단위 구분 없이 협의절차를 두는 경우 정책 수립 및 시행의 효율성 측면에서는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겠음.

<인구전략기획부 운영 방향>

□ 각 부처의 역할

- (인구전략기획부) 강력한 컨트롤타워로서 ‘전략·기획, 조정’할 수 있도록 사회부총리 역할 수행, 기획·예산·평가기능 부여
- (각 부처) 구체적 정책 및 사업 기존 부처가 수행
 - * 출산·아동·노인(복지부), 일·가정양립(고용부·여성부), 가족·청소년(여성부) 등

□ 인구전략기획부 기능

- (중장기 전략기획 기능 이관) 복지부 인구정책 및 기재부 인구 관련 중장기 발전전략 이관,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 신설

- 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 법령 및 정책 등
- 기재부 : 인구 관련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기능
- 신설 기능 : 저출생, 고령사회, 인력·외국인 등 부문별 전략·기획 기능

- (예산 및 평가 기능 신설)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저출생사업 예산 사전배분·조정기능 부여

- 관계부처의 인구정책을 조사·평가·환류 기능 신설

- (문화·인식개선 기능 강화) 문화·인식개선 전담부서 및 실장급 대변인 설치로 출산·양육 관련 홍보·인식개선 기능 강화

- (인구통계 분석 기능 강화) 중장기 인구정책 기초자료로 인구 관련 통계 분석·연구 기능 강화

- 통계청 : 인구동태 통계분석 기능 이관
- 신설 기능 : 인구 관련 각종 통계 분석·연구 기능

자료: 보건복지부

바.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 수립(안 제8조)

- 개정안에서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과 유사한 체계와 내용으로 5년 주기의 인구위기 대응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는데, 특이사항으로는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절차를 두고 있으며, 그 외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이전 기본계획에 대한 분석·평가(안 제8조제3항제2호), 장래 인구구조 변동 예측 및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안 제8조제3항제3호) 등이 신설됨.

현 행	전부개정안
제20조(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 ①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중·장기 정책 목표 및 방향을 설정하고, 이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 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중장기 ----- 관련 예산의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인구위기대응정책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기본계획안을 작성하고,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및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한다.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 ----- ----- ----- -----.
③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현행 제3항 본문과 같음)
1.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1. 인구위기대응정책----- -----

<u><신 설></u>	<u>2. 이전 기본계획에 관한 분석·평가</u>
<u><신 설></u>	<u>3. 장래 인구구조 변동 예측 및 인구 구조 변동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u>
<u>2. 기간별 주요 추진과제와 그 추진방법</u>	<u>4. (현행 제2호와 같음)</u>
<u>3. 예산규모와 자원조달 방안</u>	<u>5.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분야별 투자자원 배분 방향</u>
<u>4.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u>	<u>6. --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추진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 -----</u>
<u>⑤ 기본계획의 수립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u>④ (현행과 제5항과 동일)</u>

□ 첫째,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과의 협의 절차와 관련하여 인구문제는 국가적 차원에서도 중요한 대응 과제이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그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일 수 있으므로, 기본계획 수립 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제도화함으로써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을 발굴·수립할 수 있을 것이므로 보다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저출산·고령화 대응 방안을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둘째,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기본계획 수립 시 인구위기대응위원회 및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 승인을 얻어 이를 확정하도록 규정한 부분과 관련하여, 수립된 기본계획을 변경할 때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이러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는 예외를 두도록 할 필요도 있겠음.

□ 셋째, 장래 인구구조 변동 예측 및 인구구조 변동에 따른 경제·사회적 영향(안 제8조제3항제3호)과 관련하여서는 조문을 추가하여 그 범위, 평

가 방법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보완할 필요가 있겠음. 관련하여 우리 위원회에는 인구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려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윤준병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제2201364호)이 계류되어 있음.

□ 참고로, 현재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분석평가 등 정부 정책이나 사업에 대한 영향평가제도가 일부 시행되고 있음.

< 주요 정책영향평가 사례 >

구분	환경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성별영향분석평가	부패영향평가	고용영향평가	아동정책영향평가
도입 시기	1981	1998	2005	2006. 4 시행	2011	2019.3월 시행
주관 부처	환경부	국무총리실	여성가족부	국민권익위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관계 법령	환경영향평가법	행정규제기본법제7조	성별영향분석평가법	부패방지법 제28조	고용정책기본법제13조	아동복지법 제11조의2
도입 목적	· 환경오염 사전예방 등	· 규제의 질 제고 · 불필요한 규제 신설 방지 등	· 정부정책의 성평등 실현 · 양성평등 정책마련	· 부패사전차단 · 반부패정책 추진기반마련 등	· 고용친화적 정책 추진 지원	· 아동친화적 정책 추진 지원
평가 대상	도시개발 등 17개 분야 · 80개 사업	규제 신설·강화하는 모든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모든 법령, 주요정책	모든 법령, 행정규칙, 자치법규	중앙 · 지자체 정책	중앙 · 지자체 정책
	사전평가(○) 사후평가(○)	사전평가(○) 사후평가(×)	사전평가(○) 사후평가(○)	사전평가(○) 사후평가(×)	사전평가(○) 사후평가(○)	사전평가(○) 사후평가(○)
주요 평가 기준	· 자연 환경 · 대기 환경 · 수 환경 · 토지 환경 · 생활 환경 · 사회경제 환경	· 규제 필요성 · 대안의 발굴 · 검토 · 대안별 비용 편익 분석 · 대안 분석의 종합 결론	· 성별 통계 · 수해 분석 · 분석 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 개선 방안 · 성별 고정 관념 · 특성 · 균형 참여, 요구도 등	· 준수 부 담 합리성 · 제 재 규 정 적정성 · 부패 방지 장치의 체계성 · 특 해 발생, 이해충돌 가능성 등	· 고용 창출의 경로 · 일 자 리 의 증감 · 고용의 질 변화	· 아동권리협약의 일반원칙에 따라 아동 복지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 * (일반원칙) ▲ 무차별의 원칙, ▲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 아동의 생명·생존과 발달보장의 원칙, ▲ 아동의견 존중의 원칙

□ 아울러, 개정안에서는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중장기 투자 목표 및 분야별 투자재원 배분방향’(안 제8조제3항제5호)을 규정하고 있는바, 투자의 안정적이고 실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현행과 같이 재원의 ‘조달방안’도 추가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안 제8조제3항제6호에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추진 및 전략적 투자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중요 사항에 관한 것인 만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수정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사.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에 대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사전 조정 및 심사(안 제9조제3항 등)

- 개정안에서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으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한 예산요구서를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조정·심사한 후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함(안 제9조제3항 등).

현 행	전부개정안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u>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u> 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u>시행계획</u> 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u>시행계획</u>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u>시행계획안</u> 을 수립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u>시행계획안</u> 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u>시행계획안</u> 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u>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안(이하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u>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시행계획에 위반되는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를 변경하도록 요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기본계획에 따라 점검할 수 있다.	② (현행 제21조제2항과 동일)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다	③ ----- -----

음 해의 <u>시행계획</u> 및 지난 해의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를 종합하여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 <u>시행계획안</u> ----- 매년 5월 31일까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일·가정양립, 양육·돌봄, 주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이하 “저출생 관련 사업”이라 한다)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신 설 >	④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출한 시행계획안 및 예산요구서를 조정 및 심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마련하고,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인구위기대응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인구위기대응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3. 다음 연도 인구위기대응사업의 시행 계획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5. 그 밖에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정하는 사항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	⑤ ----- --<u>인구위기대응정책</u>----- 인구구조 변화 및 -----

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 신 설 >	⑥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저출생 관련 사업 예산 편성 시 국가 재정총량 규모 조정, 기금·회계 건전성 관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신 설 >	⑦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이 국회에서 의결되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시행계획을 확정한다.
⑤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⑧ (현행 제5항과 동일)

□ 이처럼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저출생 예산에 대한 사전심의 권한이 부여됨으로써 보다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음. 참고로, 유사 입법례로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에 대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예산안 사전 심의 권한이 인정되고 있음¹⁴⁾.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등) ①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해당 기관의 다음다음 연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을 매년 10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 동안 예정된 신규사업 및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주요 계속사업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를 매년 1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생략) ④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는 해당 기관의 예산요구서 중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각각 제출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우선순위에 대한 의견과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 및 예산요구서에 대하여 제12조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조사·분석·평가와 연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마련하고,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매년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알려야 한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분야별·사업별 투자우선순위	
--	--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방향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 3의2.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연구회 및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포함하는 예산의 배분·조정 내역
4.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간의 조정 및 연계
5. 대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투자적정성, 중점추진방향 및 개선방향
6. 다수 부처 관련 국가연구개발사업의 부처별 역할 분담
7. ~ 9. (생략)
- ⑥ (생략)
- ⑦ 제2항과 제4항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 중 국방부장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중기사업계획서와 예산요구서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⑧ 기획재정부장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 첫째, 인구위기대응정책은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는 정책을 포괄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안 사전심의권의 대상은 ‘저출생 관련 사업’에 한정되고 있는바, 이를 확대할 필요성은 없는지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부서별 저출생·고령화 사업 현황 >

분야	부처	과제(카드)수	주요 과제
저출생	총계	77(100%)	
	보건복지부	25(32.5%)	▲건강한 임신출산지원(고위험, 생애초기 건강관리, 청소년 산모등) 등
	고용노동부	27(35.1%)	▲일하는 모두의 육아휴직 권리 확립(보편적 육아휴직 권리) 등
	교육부	23(29.9%)	▲아동돌봄기관의 공공성 강화(국공립 등 공보육 확충) 등
	중소벤처기업부	5(6.5%)	▲경력단절여성의 창업지원 강화, 청년의 지역자립 지원 등
고령화	총계	100(100%)	
	보건복지부	59(59.0%)	▲노인 일자리 사업을 통한 노년기 소득 보장, ▲국민연금 급여 수준 제고 ▲고령자 만성질환 관리 강화, ▲치매노인 및 가족돌봄 지원 확대 ▲노인요양시설의 서비스 질 제고(공공이 운영하는 요양시설 확충) ▲요양시설 내 의료서비스 강화 등
	고용노동부	23(23%)	▲고령자 계속고용 지원(고령자 계속 고용장려금,) 등
	교육부	10(10%)	▲평생교육직업훈련 참여를 위한 학습비 지원(평생교육바우처) 등
	국토교통부	9(9%)	▲고령자 맞춤형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고령자 매입임대공급) 등

※ 과제별 수관 부처 중복 포함

자료: 보건복지부

14) 이외에도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장관,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에 대해서는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예산안 사전 심의 권한이 인정됨.

- 둘째, 개정안 제9조제6항에서는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 편성 시 ‘국가 재정총량 규모 조정, 기금·회계 건전성 관리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안 제9조제6항), 앞서 본 「과학기술기본법」에서도 기획재정부가 심의기구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로 유사하게 규정되어 있으나, 다소 광범위하게 규정되어 있어 예외 인정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음.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2제8항: “기획재정부장관은 정부 재정규모 조정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5항에 따른 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여야 한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4조제6항: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제5항에 따라 의결된 종합시행계획을 존중하여야 한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0조의2제4항: “기획재정부장관은 국가재정상황과 재정운용원칙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결과를 토대로 재난 및 안전관리 사업에 관한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한다.”

- 셋째, 개정안에서는 저출생사업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바, 대통령령이 적시에 마련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겠음.

- 넷째,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저출생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요구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받아, 조정·심사 및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6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는바, 면밀한 심사를 위해 한 달의 기간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검토가 필요해 보임.

- 그 외, 안 제9조제4항제5호 중 ‘위원회’는 ‘제11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로 수정하여야겠고, 안 제9조제5항 후단 중 국가 등이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에 대하여 심층적인 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이를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으로 수정하는 것이 그 의미상 보다 명확할 것으로 보임.

아.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안 제11조)

- 개정안 제11조에서는 인구위기대응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대체하는 기구로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위원장인 인구위기대응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음(안 제11조).

현 행	전부개정안
제23조(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①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하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인구위기대응위원회) ① 인구위기 대응정책----- -----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2.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중·장기 정책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3. 기본계획에 관한 사항 4.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5.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u>< 신 설 ></u> 6. 그 밖에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제5항의 간사위원이 부의하는 사항	② (현행 제2항 본문과 같음) 1.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변화추이 예측, 사회·경제적 영향 및 ----- 2. 인구위기대응정책----- ----- 3. (현행 제3호와 같음) 4. (현행 제4호와 같음) 5.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등 인구위기대응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7. ----- 인구위기대응정책-----위원장이----- -----
③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위원장은 대통령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된다.	③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 ----- ④ -----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제2호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되며,-----.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2. <u>고령화 및 저출산에</u> 관하여 학식과 경력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 <u>< 신 설 ></u> ⑤ 위원회에 간사위원 2인을 두며, 간사위원은 보건복지부장관과 제4항제2호의 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u><신 설></u> ⑥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현행 1호와 같음) 2. <u>인구위기대응정책</u> ----- ----- 3. <u>기타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u> <u>< 삭 제 ></u> ⑤ 위원회는 <u>인구위기대응정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u> ⑥ (현행과 같음)
--	--

□ 인구위기대응위원회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비교 시 위원 수는 위원장 1명 포함 25명 이내로 동일하고, 위원장 등에서 차이가 있음.

< 인구위기대응위원회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비교 >

	인구위기대응위원회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소속	명시되어 있지 않음	대통령
위원장	인구전략기획부장관	대통령
위원 수	위원장 1인 포함 25인 이내	위원장 1인 포함 25인 이내
심의사항	·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변화 추이 예측, 사회·경제적 영향 및 전망에 관한 사항 ·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평가 등 인구위기대응정책의 평가에 관한 사항 ·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구조의 분석과 사회경제적 변화 전망에 관한 사항 · 저출산·고령사회정책의 조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현행 대통령 소속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위원장을 대통령으로 하고, 부위원장과 함께 보건복지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법제처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위촉직 민간위원 14명으로, 총 24명으로 구성되어 있음.
- 현행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임에도 심의·자문 이상의 권한을 갖지 못하여 각 부처에 산재한 인구정책을 총괄·조정하여 효과적인 이행을 뒷받침할 만한 책임 있는 컨트롤타워로서 기능하는 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이에 개정안은 인구위기대응위원회를 신설하여 기본계획과 시행계획 전반,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위기대응정책 조정 전반에 걸쳐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심의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을 중심으로 한 효율적 인구구조 변화 대응 정책을 뒷받침하려는 것으로 의미가 있다고 하겠음.
- 한편, 인구위기대응위원회의 소속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으나 위원장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임에 비추어 볼 때 그 소속을 인구전략기획부로 하려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조정 사항을 실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할 수 있는 위원이 참여함으로써 지역 대표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위원 수를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30명이내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특히 개정안에서 위원회 구성을 기존 정부·전문가 위주에서 청년·양육부모 등도 포함하기 위한 취지로 ‘기타 다양한 의견 반영을 위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를 추가하고 있다는 점(안 제11조제4항제3호)도 위원 수 확대의 필요성 검토에 참고할 필요가 있겠음.

- 그 외, 위원회의 심의 사항으로 안 제11조제2항제1호에서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비한 중·장기 인구변화추이 예측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저출생·고령화 및 인구의 국가 간 이동 등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로 표현을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안 제11조제5항의 ‘관계 행정기관’의 의미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자.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조사·분석·평가(안 제13조)

- 개정안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를 실시하게 하도록 함(안 제13조).

현 행	전부개정안
제29조(조사 및 연구)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 및 연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 및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조사연구기관을 설치하거나 연구소·대학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기관에 조사 및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제13조(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평가) ①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매년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조사·분석 및 평가(이하 “평가등”이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위기대응정책의 평가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연구기관, 기업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인구위기대응정책을 추진할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평가등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평가등의 범위·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복지, 보건의료, 평생학습 등 특정 분야의 수요는 날로 늘어나는 반면, 사회기반시설의 유희화, 과잉공급의 문제도 동시에 발생하는 등 인구변화는 행정의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

에서, 개정안과 같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으로 하여금 인구위기대응정책에 대한 분석 및 평가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면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결과를 의무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것은 정책 실효성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됨.

- 다만,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외에 관련 연구기관, 기업 및 단체에 대해서도 필요한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그 범위가 다소 광범위한 측면이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성도 있음.

차.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안 제14조)

□ 개정안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수립·조정, 평가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면서(안 제14조제1항),

지정된 전문 조사·연구기관은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가에 대한 지원, 저출생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분·조정에 대한 지원, 인구위기대응정책의 평가등에 대한 지원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것으로 규정함(안 제14조제2항).

현 행	전부개정안
<신 설>	제14조 (전문 조사·연구기관의 지정 등) 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인구위기대응정책의 수립·조정, 평가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그 밖에 전문인력 및 조사·연구능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위원회가 심의하는 주요 정책 및 계획의 수립·조정에 대한 지원 2.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 및 평

	<u>가에 대한 지원</u> 3. 제9조제3항에 따른 저출생 관련 사업에 대한 예산의 배분·조정 등에 대한 지원 4. 제13조에 따른 인구위기대응정책의 평가등에 대한 지원 5. 제15조에 따른 저출생 정책의 협의·조정에 대한 지원 6. 지역별 인구 및 산업별 인력수급 전망에 대한 연구 및 평가 7.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 등 각 생애주기별로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구위기 대응정책에 대한 기획·평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③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다. ④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2. 제1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등 수행하는 업무가 그 지정의 목적을 벗어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⑤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의 지정 및 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의 수립 및 평가 등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될 전문 조사·연구기관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 기준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정부는 1개 기관을 전문 조사·연구기관으로 지정할 계획임.

□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인구 문제를 전담하여 다루는 국립 연구기관은 없으며, 관련 기관으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등이 있을 뿐인바, 신생부처로서 인구전략기획부가 설치 취지에 맞게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인구정책 전문 연구기관의 신규 설치도 고려할 필요는 있겠음.

프랑스의 경우 인구정책 전문 싱크탱크로서 국립인구학연구소(INED)를 설립(1945년)하여 출산·가족·불평등·건강·주택 등 인구정책을 총망라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바, 국립인구학연구소는 인구학 관련 광범위한 지식 생산으로 프랑스의 인구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¹⁵⁾.

15) 민유기(경희대학교), 「프랑스 국립인구학연구소 설립과 역사인구학의 성장 - 인구위기 극복을 위한 역사학의 기여」, 『서양사론』 159호, 2023, 12.

□ 그 외, 개정안 제14조제3항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전문기관이 그 업무를 수행하는 데 드는 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전문기관에 출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전문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외의 기관도 지정될 수 있으므로 출연 외에 보조금과 같은 형식으로의 예산 지원도 가능하도록 수정하는 것도 필요해 보임.

카. 저출생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획(안 제15조)

- 개정안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를 요하는¹⁶⁾ 저출생 관련 정책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통보하는 방식으로, 협의대상이 아닌 저출생 정책을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직접 인구전략기획부장관과 협의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의견제시 권한을 명시하고 있음(안 제15조).

현 행	전부개정안
<신 설>	제15조(저출생 관련 정책의 협의·조정 및 기획)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협의를 요청하는 사회보장제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출생 관련 정책(이하 이 조에서 “저출생 정책”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 그 사실을 인구전략기획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16)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협의 및 조정)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재원의 규모·조달방안을 포함한 재정에 미치는 영향 및 지역별 특성 등을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고 상호협력하여 사회보장급여가 중복 또는 누락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할 경우 신설 또는 변경의 타당성, 기존 제도와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지역복지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자료의 수집·조사 및 분석에 관한 업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2.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한국사회보장정보원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 또는 단체
-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협의를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조정한다.
- ⑤ (생략)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저출생 정책을 신설 또는 변경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구전략기획부장관과 미리 해당 사업의 내용을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통보 또는 제2항에 따른 협의 요청을 받은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해당 사업과 그 밖의 저출생 정책 간의 중복을 방지하고 해당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협의를 요청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통보를 한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제3항에 따라 제시한 의견을 존중하여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⑤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저출생 대응을 위해 필요한 새로운 저출생 관련 사업을 기획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사업을 다음 연도 예산 요구시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 이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저출생 사업 관련 예산안 사전심의권과 함께, 저출생 정책에 관한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의 의견제시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책임성과 전문성을 갖고 효율적으로 저출생 정책을 조정하도록 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사회보장기본법」에서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국무총리 소속의 사회 보장위원회의 조정 권한이 부여되어 있는바, 개정안에서도 협의 불성립 시 조정과 관련한 규정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임.
- 한편, 개정안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사전적으로 새로운 저출생 관련 사업을 기획하였을 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해당 사업을 다음 연도 예산 요구 시 포함할 것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안 제15조제5항), 이 경우 시행계획 등에 반영되었는지 여부를 통보 하는 절차를 추가하는 것도 필요하겠음.

타. 인구위기대응정책의 기본방향(안 제4장: 안 제16조부터 안 제30조까지)

- 개정안에서는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기본방향과 유사·동일한 내용으로 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15가지 정책적 사항에 대한 기본방향을 정하고 있으며, 차이점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관련 내용을 부칙의 타법 개정 방식으로 「아동수당법」으로 이동하고, 모자보건 증진 관련 내용도 같은 방식으로 「모자보건법」으로 이동함과 아울러 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등(안 제17조)과 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안 제29조) 내용을 신설하는 것임.
- 특히 개정안에서 신설된 내용인 안정적인 결혼·출산 지원을 위한 주거 안정 시책 수립·시행 의무는, 개정안이 출산 장려 중심에서 벗어나 주거·일자리·교육 등 사회구조개혁을 아우르는 인구위기대응정책을 포괄하려는 방향성을 보여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봄.

현 행	전부개정안
<u>제8조</u>(자녀의 출산과 보육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자녀가 차별받지 아니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생활을 영위하며 교육과 인성함양에 도움을 주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하고자 하는 자가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병행할 수	<u>제16조</u>(현행 제8조와 같음)

있도록 사회환경을 조성·지원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를 양육하려는 자에게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17조(안정적인 결혼·출산을 위한 주거 지원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국민이 안정적인 결혼과 출산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 안정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모자보건법」으로 이동> : 안 부칙 제2조제2항 <안 제30조제2항으로 이동> <「모자보건법」으로 이동>: 안 부칙 제2조제2항
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강구 및 지원을 위하여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비용의 통계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18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안 제14조 제2항 제7호로 이동>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⑥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 ⑥ : 「아동수당법」으로 이동: 안 부칙 제2조제1항
제11조(고용과 소득보장)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고령자가 최대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금제도 등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고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국민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생활을 할	제19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u>제12조</u>(건강증진과 의료제공)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별·연령별 건강상의 특성과 주요 건강위험요인을 고려하여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을 위한 의료·요양 제도 등을 확립·발전시키고 필요한 시설과 인력을 확충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u>제20조</u> (현행 제12조와 같음)
<u>제13조</u>(생활환경과 안전보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생활에 필요한 기능과 설비를 갖춘 주거와 이용시설을 마련하고 노인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등 쾌적한 노후생활환경을 조성하고 재해와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노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u>제21조</u> (현행 제13조와 같음)
<u>제14조</u>(여가·문화 및 사회활동의 장려)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후의 여가와 문화활동을 장려하고 이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 등 노인의 사회활동 참여를 촉진하는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u>제22조</u> (현행 제14조와 같음)
<u>제15조</u>(평생교육과 정보화)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모든 세대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이를 위한 교육시설의 설치·인력의 양성 및 프로그램의 개발 등 필요한	<u>제23조</u> (현행 제15조와 같음)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세대간 정보의 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정보화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장비 보급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u>제15조의2</u>(노후설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설계하기 위하여 재무, 건강, 여가, 사회참여 등 각 분야에서 적절한 상담과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u>제24조</u> (현행 제15조의2와 같음)
<u>제16조</u>(취약계층노인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u>저출산·고령사회정책</u>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u>여성노인·장애노인</u> 등 취약계층의 노인에 대하여 특별한 배려를 하고 도시·농어촌지역간 격차 등 지역의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야 한다.	<u>제25조</u> (취약계층노인 등) ----- ----- -----<u>여성노인·장애노인</u> ----- ----- -----.
<u>제17조</u>(가족관계와 세대간 이해증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효행을 장려함으로써 노인이 가정과 사회에서 공경받을 수 있도록 하고 세대간 교류의 활성화와 세대간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민주적이고 평등한 가족관계가 형성되도록 필요한 사회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u>제26조</u> (현행 제17조와 같음)
<u>제18조</u>(경제와 산업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산업구조 및 노동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u>제27조</u>(현행 제18조와 같음)
<u>제19조</u>(고령친화적 산업의 육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구의 고령화에 따른 상품 및 서비스 수요의 변화에 대비한 새로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u>제28조</u> (현행 제19조와 같음)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에게 필요한 용구와 용품 등의 연구개발·생산 및 보급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① 국가는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외 거주하는 사람의 국내 유입에 관한 적절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의 수립·시행 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7조의2 (인구교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신 설>(현행법 제9조제2항)	제30조(인구교육 등) ① ----- ----- 저출생 및 고령화에 따른 인구구조 변화 ----- ----- ----- -----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첫째, 개정안의 ‘인구위기대응정책의 기본방향’은 제4장에 위치하고 있는데, 현행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과 같이 법 체계상 제1장인 총칙 다음에 제2장의 기본방향을 앞서 규정한 후 이어서 제3장에서 정책의 수립 및 추진체계를 규정하는 방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겠음.

□ 둘째, 개정안은 우리나라의 인구위기 대응에 관한 기본법인 만큼, 인구정책의 핵심과제로서 인구의 안정과 관련된 정책 방향을 우선적으로 추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 셋째, 추가될 필요가 있는 사항으로서, 안 제18조(경제적 부담의 경감)과 관련하여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시책의 기초자료로서 임신, 출산, 양육, 교육, 주거 등에 소요되는 비용 통계의 조사 실시를 추가할 필요가 있으며, 아울러 저출산 해소와 관련하여 모자보건의 증진 사항(현행 제9조¹⁷⁾)을 삭제할 필요성은 적은 것으로 보임.

□ 그 외 안 제16조(자녀 출산과 보육 등), 안 제24조(노후설계), 안 제25조(취약계층 노인 등), 안 제27조(경제와 산업 등), 안 제29조(인구의 국가 간 이동에 관한 지원) 등의 경우 조문 내용과 조 제목을 일치시킬 필요도 있겠으며, 안 제25조에서는 취약계층노인의 예로 여성노인, 장애인노인을 들고 있는데 독거노인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겠음.

17)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9조(모자보건의 증진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부·태아 및 영유아에 대한 건강진단 등 모자보건의 증진과 태아의 생명존중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양육의 사회적 의미와 생명의 존엄성 및 가족구성원의 협력의 중요성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과. 부칙 등

- 먼저 개정안 부칙에서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신설함으로써 개별 집행 기능을 「아동수당법」, 「모자보건법」 등 관련 법으로 이동하는 타법 개정을 규정함(부칙 안 제2조 제1항 및 제2항 등).

전부개정안	비고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아동수당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 (첫만남이용권 지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 이상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아동이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제1호의 아동양육시설이나 같은 항 제4호의 공동생활가정에서 보호 조치되고 있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42조의 자산형성지원사업에 따라 개설된 출생아동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③ 이용권을 지급받으려는 보호자(아동의 친권자·후견인 또는 그 밖의 사람으로서 아동을 사실상 보호·양육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호자의 대리인은 출생아동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용권의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이용권의 지급 대상·금액·방법, 이용기한 및 지급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모자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모성(母性) 및”을 “모성(母性)·태아(胎兒) 및”으로 한다.	▶ 첫만남이용권 조항 → 「아동수당법」으로 이동 ▶ 모자보건사업 → 「모자보건법」으로 이동 ※ 「모자보건법」 규정에 미비한 태아를 포괄하는 방향으로 개정

제3조제1항 중 “모성과”를 “모성·태아 및”으로 하고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임신·출산 및 양육에 관한 정보의 제공,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관을 설치하거나 그 업무를 관련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 안 부칙 제2조제2항은 기본방향에서 삭제한 것과 관련한 것으로,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전부개정안에서 이를 유지하는 경우 부칙에서는 삭제할 필요가 있겠음.

특히, 부칙으로 다른 법률을 개정하는 방식은 효율적인 개정방식이라는 하나, 다른 법률의 실체적 내용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안의 심사 범위를 벗어날 가능성도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할 필요¹⁸⁾도 있겠음.

□ 그 외, 안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제1항은 ‘또한’으로 하여 2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일반적인 입법례로 보기 어려우므로 문장을 별도로 조문화하는 등 변경이 필요하겠음.

현 행	전부개정안
제21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u>시행계획</u> (이하 “ <u>시행계획</u> ”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u>시행계획</u> 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u>시행계획</u> 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9조(연도별 시행계획)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소관별로 연도별 <u>시행계획안을 수립하고</u>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본계획 및 중앙행정기관의 <u>시행계획안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u>시행계획안을 수립하여</u> 한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7항에 따라 중</u>

18) 국회 법제실, 『법제기준과 실제』 (2024 개정증보판), p.912.

	<u>양행정기관의 시행계획안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안(이하 ‘시행계획안’이라 한다)이 확정된 경우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u>
--	---

□ 아울러, 안 제10조(업무의 협조)에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인구전략기획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현행과 동일한 체계화 내용으로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이나, 제2항 중 ‘시행계획안’은 ‘시행계획’으로 수정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현 행	전부개정안
제22조(업무의 협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 및 단체 등에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업무의 협조) ① (현행 제22조제1항과 동일)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기본계획안의 작성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u>저출산·고령사회</u> 관련 계획 및 정책, 관련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② <u>인구전략기획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안</u> ----- ----- <u>인구구조 변화 및 대응</u> ----- -----.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조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현행 제3항과 같음)

문 의 처
02)6788-5500

[참고자료]

<인구정책 관련 기관별 주요 기능>

구분		주요 기능	기구
기획·조정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총괄·조정 (위원장: 대통령)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심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
	보건복지부	▶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총괄 ▶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안 작성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기획재정부	▶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및 중장기 발전전략	미래전략국 경제구조개혁국
부문별 정책·사업	보건복지부	▶ 임신·출산 및 자녀 양육 지원정책 ▶ 아동복지 정책총괄, 아동수당	인구정책실 인구아동정책관
		▶ 노인 보건복지정책 총괄, 노인학대예방, 노인주거복지시설, 지역사회 통합돌봄 ▶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 치매 종합대책, 치매환자 및 가족지원, 노인 건강관리	인구정책실 노인정책관
		▶ 보육정책 기획, 보육교사 관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부모교육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 '24.6.27. 교육부 이관
	여성가족부	▶ 여성인력 개발, 일·생활 양립정책 ▶ 여성 경제활동 촉진 및 경력단절 예방	여성정책국
		▶ 청소년정책, 청소년단체 지원 ▶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 청소년 복지정책, 취약계층 청소년 보호·지원, 위기 청소년 사회안전망 구축	청소년가족정책실 청소년정책관
		▶ 가족정책 기획, 가족상담·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 한부모가족 지원, 양육비 이행제도 ▶ 아이돌봄, 가족친화 문화조성 ▶ 다문화가족 지원, 결혼중개업 관리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정책관
	고용부	▶ 고령화 대응 고용대책, 고령자 전직·취업지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고용차별 금지 ▶ 남녀고용평등 및 일가정양립 지원 ▶ 여성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	통합고용정책국
		▶ 청년고용정책 총괄, 대학 진로지도 사업지원 ▶ 청년 취업지원사업, 청년 자산형성 지원	통합고용정책국 청년고용정책관

구분		주요 기능	기구
	교육부	▶ 초등 돌봄체계 구축, 초·중등 방과후학교 지원	교육복지돌봄지원관
		▶ 유보통합('24.6.27.), 유아교육비 지원, 유치원 방과후 과정 운영 지원, 급식·안전, 유치원 평가	교육복지돌봄지원관
	국토부	▶ 신혼부부·고령자 주거지원	주거복지정책관
	법무부	▶ 출입국·외국인 정책	출입국·외국인정책 본부
	행안부	▶ 인구감소지역 대응, 생활인구 정책, 지방소멸 대응기금	균형발전지원국

※자료: 행정안전부 제출 자료 발췌